

예 규

◎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예규 제39호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장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공포한다.

2011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장규정”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장 규정”으로 한다.

제1조(목적)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로 한다.

제3조(회장의 규격등) 제2항 제1호 중 “기면은 녹색으로”를 “기면은 군청색으로”로 하며, 제2호 “기면에 의회의 회장을 표지”를 “기면에 의회의 회장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명칭을 표지하며, 회장의 외형 및 글씨는 금색으로”로 한다.

별표2 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기모형도 중 모형 및 규격의 <실내용>
“녹색(바탕색)”을 “군청색(바탕색)”으로, <옥외용> “녹색(바탕색)”을
“군청색(바탕색)”으로 변경한다.

부칙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중”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규
정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규정 중 “별지1,2,3,4”표창서식은 본 규정의
휘장모형을 준용한다

1. 개정이유

강서구의회 휘장을 표지하고 있는 의회기 기면의 바탕 색상을 서울시 각 구의회가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색상으로 변경하여 의회기의 상징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규정안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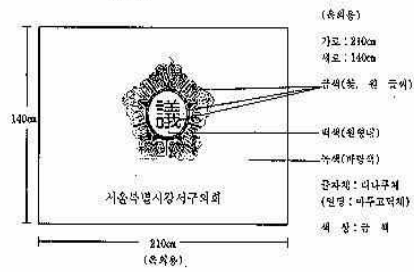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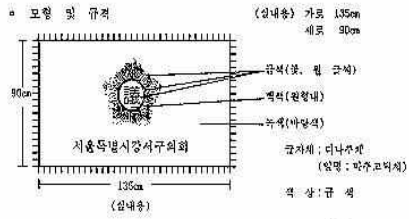
-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제명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휘장규정”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휘장 규정”으로, 제1조(목적)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로, 부칙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표창규정중”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규정 중”으로 각각 변경하고,
- 나. 제3조(휘장의 규격등) 제2항 제1호 중 “기면은 녹색으로”를 “기면은 군청색으로”로 하여 기면의 색상을 변경하고, 제2호 “기면에 의회의 휘장을 표지”를 “기면에 의회의 휘장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명칭을 표지하며, 휘장의 외형 및 글씨는 금색으로”를 추가하며,
- 다. 별표2 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기모형도 중 모형 및 규격의 <실내용> “녹색(바탕색)”을 “군청색(바탕색)”으로, <옥외용> “녹색(바탕색)”을 “군청색(바탕색)”으로 각각 변경한다.

현 행

<별표2>

《별표2》 《개정 1999. 9.35》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회기모형도



◦ 재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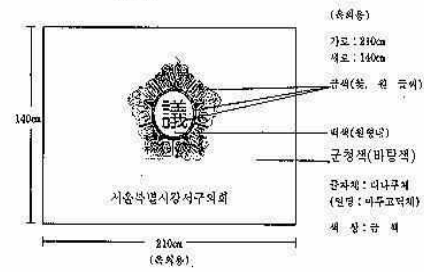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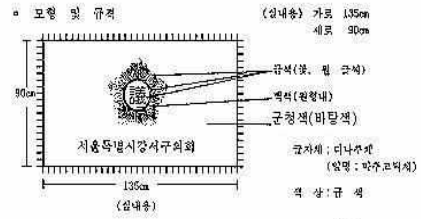
- 후회용: 광목으로 하의 나열으로 적과
- 상내용: 석회화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후린지" 부착

개 정 안

<별표2>

《별표2》 《개정 1999. 9.35》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회기모형도



◦ 재 료

- 후회용: 광목으로 하의 나열으로 적과
- 상내용: 석회화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
모서리부분은 금색으로 "후린지" 부착